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8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연월일	2018.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#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8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개정이유

「고령군 군세 감면조례」의 적용기한이 2017. 12. 31.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.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 연장(2020.12.31.까지 3년 연장)

가. 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

나. 제5조(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)

다. 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)

○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

가. 제10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
-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로 용어 변경

## 3. 조례개정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

다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바. 기타 관련사항 :

##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4조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자동계좌이체”를 “자동이체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